

검 토 의 견 서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686)

- 황유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86호,
「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
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
것입니다.
-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등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에
근거한 타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
-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 임기를 타 위원회와
동일하게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
공감하며,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